

##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21명"을 "19명"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u>21명</u>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u>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                      무원정원규칙</u>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이            하</p>	<p>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                      ----- <u>19명</u> -----                      ----- <u>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                      무원조례시행규칙</u> -----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생            락</p>